



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

THE DONGNAM LAW FIRM, Notaries & Attorneys-at-Law

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-1

홍우빌딩 7층

【별지 제33호서식】

대표전화 : 539-5011

F A X : 539-5010

등부 2019년 제 2545 호

인 증 서

제 4 조 ("을"의 업무 범위 및 의무)

1. "을"은 "갑"이 취급한 대출금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양도한 "매출채권"의 입금계좌인 "지정계좌"를 "갑"과의 사전 동의 없이 "지정계좌"의 정보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,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입출금 업무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.
2. 본건 대출거래를 위해, 1 항의 지정계좌를 "을" 이 거래하는 "쇼핑몰"의 "지정계좌"로 등록하여야 하며, 그 정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"갑"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나, 대출금이 "대부거래표준약관" 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"을"로부터 양도받은 "쇼핑몰" 의 "매출채권"을 "갑"이 직접 청구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, 그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5 조(계약기간)

1. 계약기간은 2019년 7월 9일부터 2020년 7월 8일(1년) 까지로 한다.
2. 제 1 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"갑"과 "을" 사이에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,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 6 조 (협약의 해지)

본 "업무협약"의 해지를 원할 때는 "갑"이 취급한 "을" 명의의 대출금 등을 전액 상환하거나 상환받은 다음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해지 통지할 수 있다.

제 7 조 (비밀유지)

"갑"과 "을"은 본 협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 및 금융정보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"을"의 모든 정보를 "을"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함부로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.

제 8 조(손해배상 등)

1. 어느 일방이 본 협약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,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2. "을"이 "갑"에게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양도한 "대출채권"의 입금계좌인 "지정계좌"에 입금된 금원 중 피담보채권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은, 그 대출 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는 "갑"에게 그 소유권(처분권)이 있음을 "을"은 인정하고, 만약 이를 위배할 때에는 횡령 또는 배임의 죄책을 진다.

제 9 조 (합의관할)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"갑"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이 업무협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하기로 하며, 업무협약서 원본 2 통을 작성하여 "갑"과 "을"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 통씩 보관한다.

2019년 7월 9일

(갑)

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2 길 15, 10 층, 11 층

회 사 명 : (주)누리펀딩

(주)누리펀딩 대부

사내이사 : 김 정 권

사내이사 : 김 정 권

(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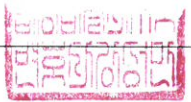

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, 10층, 11층

회 사 명 (개인) : 대표자 :

76

[별지 제35호의2서식]

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

| | | |
|--|-------|---|
| 등부 2019 년 제 | 2545 | 호 |
| 인 증 | | |
| 위 업 무 협 약 서 _____에 기재된 | | |
| 협약인(갑) 주식회사 누리편당 사내이사 김 정 권 _____ | | |
| 협약인(갑) 주식회사 누리편당대부 사내이사 김 정 권 _____ | | |
| 협약인(을) 김 [REDACTED] _____ | | |
| 대리인 김 [REDACTED] _____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·서명날인이 각 그 본인들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 | | |
|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 등의 대리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| | |
|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. _____ | | |
|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. _____ | | |
| 2019 년 07 월 08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 _____ | | |
|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| | |
|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| | |
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, 7층 (대치동, 홍우빌딩) | | |
| 공증담당변호사 | 강 서 안 |  |
| | | |